

의안번호	2203847
의 퇴 인	용혜인 의원
회 답 일	2024.9.13.
추계번호	24B3703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1항 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	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제1항 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¹⁾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

1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
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예외 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(이하 “초단시간 노동자”)를 삭제하는 내용으로,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[표 1]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

현행법	개정안
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<u>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</u>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<u>1년</u>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아니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을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함
 -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²⁾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8.33%이므로, 본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“지원 대상자 수” 및 “임금총액”에 관한 정보가 필요
- 그러나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지원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며,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23년 기준 160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

2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사용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

[표 2] 15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

(단위: 천명)

연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근로자 수	904	960	1,095	1,302	1,304	1,512	1,577	1,600

자료: 통계청, 2024년 9월 11일 접속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